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투자중재판정에 대한 법원 ‘환송’ 제도를 중심으로 -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오 현 석

*논문접수 : 2026. 4. 20. *심사개시 : 2026. 4. 22. *게재확정 : 2026. 5. 6.

〈목 차〉

I. 들어가며	2. 중재판정 취소사유 및 절차
II. 국제투자중재판정 취소절차	3. 취소 결정의 방식 및 항소절차
1. 중재판정 취소의 의의	4. 관련 사례 분석
2. 중재판정 취소신청의 관할과 취소절차	IV. 영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3. 중재판정 취소 결정 및 효과	1. 중재판정 취소절차에 대한 분석 및 평가
4. 중재 재신청	2. 정책적 시사점
5. 소결	V. 나가며
III.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절차 분석	참고문헌
1. 의의	

I. 들어가며

현대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제도는 투자유치국의 부당한 규제나 조치로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으며, 절차적 하자나 관할권의 오인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판정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수요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ISDS 제도에서 중재판정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불복 수단은 중재판정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중재판정 취소’ 절차이다. 이

러한 중재판정 취소는 중재절차에 적용된 규칙과 집행 근거가 되는 협약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뉜다. 첫째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협약에 근거한 절차로, ICSID 내부의 자체적인 취소위원회를 통해 판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는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 뉴욕협약)’에 의해 집행되는 비(非) ICSID 절차로, 이 경우에는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서 해당국의 중재법에 따라 취소소송이 진행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재판정 취소 이후의 후속 절차이다. 현재 ICSID 협약과 대다수 국가의 국내 중재법은 중재판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기존과는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점에서의 재시작’은 중재 절차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인 증거조사와 변론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결과적으로 절차적 경직성은 ISDS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에 대한 강한 회의론과 제도 자체의 폐기 논란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¹⁾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원래 중재를 담당했던 중재판정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환송(remiss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사소송법상의 ‘파기환송’과 유사한 논리로 작동하며, 중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영국의 전략적 선택이 반영된 것이다.²⁾ 최근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Elliott 간의 ISDS 사건은 독특한 영국 중재시스템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사건은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을 거치는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2025년 12월, 고등법원이 최종적으로 원 중재판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주목할 점은 영국 고등법원이 중재절차를 전면 무효화 하는 대신 사건을 기존 중재판정부로 환송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는 중재판정 취소 시 새로운 판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기존 절차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중재심리에 소요되는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킨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영국 중재법은 환송

1) 오현석, “ICSID 취소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2호(2022. 6.), 136면.

2) Gultutan, D. (2024). The UK Law Commission’s Reforms Proposed to the English Arbitration Act 1996: Bonum, Malum et Turpe.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Bulletin, 44(1), p. 202.

제도와 더불어 법원이 판정 내용을 직접 '변경(variation)'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함으로써 일반적인 취소제도와는 차별화된 효율성을 제공한다. 중재판정부의 법리 적용 오류를 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으면서도 절차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은 국제중재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해사나 건설 분쟁처럼 복잡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이 제도는 중재판정 전체를 무효화 하지 않고도 법률적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환송 및 변경 제도는 런던이 세계적인 중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기존 중재판정부에 사건을 환송하는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한 차례 결론을 내렸던 동일한 판정부에 사건을 다시 맡기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오류 시정과 공정한 재심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적 우려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 중재법이나 ICSID 협약 체제와는 차별화된 영국 특유의 실무 중심적 중재판정 취소제도 운용이 오늘날 영국 중재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견인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영국의 환송 제도는 절차적 엄숙주의보다는 '분쟁의 신속한 종결'과 '경제성'이라는 중재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국제중재 허브(hub)로 도약하기 위해 중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우리로서는 영국의 독자적인 취소 및 환송 제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제도의 외형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 영국 중재법의 체계적 구조와 법리, 그리고 오랜 기간 축적된 판례법상의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중재 실정에 적합한 요소들을 선별하고, 이를 향후 중재법 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중재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글로벌 분쟁해결 시장에서 대외적 경쟁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ICSID 협약 및 UNCITRAL 모델법 체제하의 국제투자중재판정 취소절차를 검토하고, 이를 영국 중재법상의 취소제도와 비교·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특히 중재판정 취소 시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판정부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영국의 환송 제도가 지닌 독자성과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영국 중재법의 도입 배경과 입법 취지 등을 살펴, 분쟁해결의 신속성, 비용 절감,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전문성 존중이라는 핵심 가치가 영국 중재법의 법리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다. 아울러 실제 환송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법원의 환송 취지가 실무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피고, 중재지(seat of arbitration) 선택이 단순한 지리적·법리적 결정을 넘어 후속 불복절차의 성격과 예측 가능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영국의 독특한 중재 메커니즘이 국제투자 분쟁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으로써,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우리 국가적 중재 역량을 강화하고 중재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실무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궁극적인 지향점을 둔다.

II. 국제투자중재판정 취소절차

1. 중재판정 취소의 의의

국제중재에서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UNCITRAL 모델 중재법 제34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오직 ‘취소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ICSID 협약 제53조 제1항 역시 협약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소나 구제 수단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오로지 ‘취소제도(annulment)’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 ‘취소’는 ‘상소(appeal)’와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개념이다.³⁾ 상소가 중재판정의 실체적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라면, 취소는 중재판정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켜 중재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재지 법원이나 ICSID 취소위원회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한만을 가질 뿐, 해당 중재판정을 직접 변경하거나 자신의 결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실체적 판단 권한은 갖지 않는다.⁴⁾

취소절차의 심리 범위 또한 판정 내용의 실체적 정당성이 아닌, 결정 과정의 ‘절차적 합법성’에 국한된다. 일례로, *Fraport v. Philippines* 사건 취소위원회는 *Klöckner I* 취소 판례를⁵⁾ 인용하며 “취소위원회는 중재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⁶⁾

3) Christoph H. Schreuer, *ICSID Annulment Revisited*,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30(2), 2003, p. 104.

4) 정선주,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대상”,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2022. 2.), 4면.

5) *Klöckner Industrie-Anlagen GmbH and others v. United Republic of Cameroon and Société Camerounaise des Engrais*, ICSID Case No. ARB/81/2, Ad hoc Committee Decision on Annulment (3 May 1985).

이는 취소절차가 중재판정에 대한 재심이 될 수 없으며, 판정부의 사실인정이나 법리 판단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과 취소위원회는 중재법 및 협약에 명시된 취소사유에 한해서만 개입하며, 사실관계 오인이나 법률 적용의 착오는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소와 취소의 경계를 명확히 해왔다.⁷⁾ 이러한 취소제도의 기능과 권한의 한계는 *Orascom v. Algeria* 사건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해당 사건 취소위원회는 취소절차의 본질이 중재판정의 실체적 내용을 수정하는 데 있지 않고, 결정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취소절차와 상소절차는 다르다고 하면서, 취소위원회는 단지 중재판정을 확정하거나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더라도 중재판정의 내용을 취소위원회의 결정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⁸⁾

2. 중재판정 취소신청의 관할과 취소절차

가. 중재규칙에 따른 취소절차

국제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 관할은 적용되는 중재규칙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체제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ICSID 중재규칙에 의거한 중재판정은 ICSID 협약의 ‘자기완결적 (self-contained)’ 특성에 따라 외부 법원이 아닌 ICSID 사무국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 취소위원회)에서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 둘째,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추가규칙(Additional Facility Rules),⁹⁾ 그리고 기타 상사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¹⁰⁾

6) *Fraport AG Frankfurt Airport Services Worldwide v.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CSID Case No. ARB/03/25,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Annulment of Fraport AG Frankfurt Airport Services Worldwide (23 Dec 2010), para.258.

7) 오현석, 앞의 논문, 110면.

8) *Orascom TMT Investments S.à r.l. v.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ICSID Case No. ARB/12/35, Decision on Annulment (17 Sep 2020), para.128.

9) ICSID 추가규칙에 의해 중재판정이 내려지고,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 의해 중재판정이 취소된 사건은 주로 NAFTA 사건들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 NAFTA 관련해서 투자중재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1990년대 말에는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와 멕시코가 ICSID 체약국이 아니었기에 상당수의 사건이 ICSID 추가규칙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사건들 중, *Bayview v. Mexico*, *Cargill v. Mexico*, *Feldman v. Mexico* 등은 미국 기업과 멕시코 정부 간의 분쟁으로 중립적인 중재지인 캐나다의 법원에서 취소절차를 진행하였다.

10) 영국의 상사중재기관인 LCIA(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에서 중재절차가 진행되었던 *Occidental v. Ecuador* 사건은 중재지인 런던 법원에서 취소절차가 진행되었다. (Judgment of the High Court of Justice, Queen's Bench Division of Mar. 2, 2006 in *Occidental Explor. & Prod. Co. v. The Republic of Ecuador*,

따른 중재판정은 해당 ‘중재지’ 국가의 법원에서 취소소송의 형태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에너지헌장협약(Energy Charter Treaty, ECT) 기반의 스톡홀름상업회의소(SCC) 중재판정들은 대부분 중재지인 스웨덴 스톡홀름 법원에서 취소 절차를 밟았다.¹¹⁾

국제중재 실무상 중재절차는 중재인과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여러 장소에서 분산되어 진행될 수 있다.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은 해당 증거물이 소재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며, 심리(hearing) 장소, 판정부의 합의 장소, 판정문 서명 장소가 각각 다를 수도 있다. 이처럼 절차가 다수의 장소에서 수행될 경우 중재지의 결정이 중요해지는데, 실무적으로는 중재판정의 주문과 이유를 도출하고 중재인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장소를 중재지로 간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²⁾ 중재판정문 상 중재지의 명시 의무와 관련하여,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1조 제3항은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정해진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판정은 당해 장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중재지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ICSID 협약에는 중재지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특별히 없다. 이는 ICSID 본부가 위치한 워싱턴 D.C.가 실질적인 중재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¹³⁾ 무엇보다 ICSID 중재판정은 국가 법원이 아닌 자체 취소위원회에서 불복절차를 수행하므로, 국내법적 개념인 ‘중재지’가 갖는 법적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ase No. 04/656, [2006] EWHC 345). 또한,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에서 진행된 Kaliningrad Region v. Lithuania 사건의 경우, ICC가 소재한 파리가 중재지로 되어 있어 파리 법원에서 취소절차가 진행되었다. (Judgment of the Paris Court of Appeal of Nov. 18, 2010 in Kaliningrad Region v. Lithuania, Case No. 09/19535).

11) 스웨덴 법원에서 총 9건의 투자중재판정 취소결정이 내려졌으며, 구체적으로 Petrobart Limited v. Kyrgyz (Apr. 13, 2006), Nagel v. Czech (Aug. 26, 2005), Sedelmayer v. Russia (June 15, 2005), Mercuria v. Poland (II) (12 December 2024), Festorino and others v. Poland (20 December 2023), Triodos SICAV II v. Spain (27 March 2024), CEF Energia v. Italy (27 May 2024), Foresight and others v. Spain (28 June 2024), Greentech and NovEnergia v. Italy (17 June 2024) 등이 있다.

12) 목영준,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1. 93면.

13) ICSID 협약 제62조에서 “조정절차와 중재절차는 이하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센터의 소재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중재 수행지를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으로 하고 있다.

나.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의한 중재판정 취소절차

1) 개요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추가규칙, ICC 등 상사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중재절차는 기본적으로 뉴욕협약과 중재지 국가의 중재법의 규율을 받는다.¹⁴⁾ 따라서 이러한 규칙에 기반한 중재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지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 거절(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목할 점은 UNCITRAL 중재규칙 자체에는 중재판정의 오기 정정, 해석, 추가판정에 관한 규정만 존재할 뿐, 판정의 취소나 집행 거절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 및 집행 관련 사항이 중재합의에 의한 당사자 간 사적 영역을 넘어, 해당 국가의 사법권이 개입하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UNCITRAL 중재규칙 등에 의한 중재판정의 불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국제적 통일 규범인 뉴욕협약 및 각국 중재법의 법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2) 중재판정 취소사유

UNCITRAL 모델중재법 제34조 제2항은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유를, 제2호는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다.¹⁵⁾ 실무적으로 판정의 집행 거절이나 취소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중재인의 권한유월 또는 공서양속(public policy) 위반이다.¹⁶⁾ UNCITRAL 중재는 일반적으로 절차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나, 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면 각국 법원의 사법 절차를 통해 판정 내용과쟁점이 상당 부분 공개되는 특성을 갖는다.¹⁷⁾ 모델법 및 각국 판례를 통해 확인되는 구체적

14) 한창완,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 -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법무연구, 2022년 제3호, 5면.

15)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2호(2012. 12.), 186면.

16) Noah Rubins, Judicial Review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NAFTA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Todd Weiler, 2005, p.363.

17)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되었던 Dayyani v. Korea(PCA Case No. 2015-38) 사건 역시 중재절차 등 모든 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중재판정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영국 고등법원에서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판결([2019] EWHC 3580 (Comm))만은 공개되어 있다.

인 취소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⁸⁾

첫째, 당사자의 무능력 및 중재합의의 무효이다. 중재합의 당사자에게 행위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중재합의 자체가 무효인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 이때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법에 따르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법(*lex arbitri*)을 적용한다. 둘째, 적법절차 및 방어권의 침해이다. 중재인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사유로 본안에 대한 변론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이다. 다만, 판례상 방어권 침해는 그 정도가 절차적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여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된다. 셋째, 중재인의 권한유월이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경우이다. 만약 판정 내용 중 합의 범위에 속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가분적이라면, 권한을 벗어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넷째,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절차의 하자이다. 판정부의 구성 방식이나 절차적 운영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위배되거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재법의 강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법원에서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UNCITRAL 중재규칙 체제에서 ‘중재지’는 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법적 연결점이다. 대다수 투자협정(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IIA)은 ICSID나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를 규정하면서도, 중재지의 결정은 분쟁 발생 이후의 단계로 남겨두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쟁당사자들이 사후에 중재지에 합의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처럼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중재지는 중재규칙에 의거하여 중재판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된다.¹⁹⁾ 중재지 결정 과정을 실무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가 OEPC v. Ecuador 사건이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중재지가 뉴욕협약 가입국이어야 한다는 Ecuador-USA BIT 제5조 제5항과,²⁰⁾ 합의 부

18) 오현석,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29면.

19) UNCITRAL 중재규칙 제18조 제1항: If the parties have not previously agreed on the place of arbitration,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rbitral tribunal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award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made at the place of arbitration.

20) Ecuador-United States BIT 제5조 제5항: provides that a non-ICSID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a country that is a 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is requirement enhances the ability of investors to enforce their arbitral awards. In addition, paragraph 6 includes a separate commitment by each Party to enforce arbitral awards rendered pursuant to Article VI

재 시 판정부가 중재지를 결정하도록 한 UNCITRAL 중재규칙 제18조를 근거로 삼았다. 결국 판정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런던을 본 사건의 중재지로 지정하였다.²¹⁾ 이는 중재지의 선정이 당사자의 합의를 넘어 판정부의 법리적 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제투자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부적절한 중재지 선택은 분쟁당사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재지 국가 법원의 취소 여부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만큼, 고도의 중립성을 갖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의 핵심이다. 만약 중재지의 사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유사 사건임에도 법원마다 상이한 판결을 내려 취소 결정의 일관성이 훼손되거나, 심지어 법원이 취소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오판하여 당사자의 불복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양 당사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중재지 선정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²²⁾ 더 나아가, 취소 절차의 일관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개별 국가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현 체제를 넘어, 국제투자 중재판정의 취소를 전담하는 '국제상소법원'을 상설화하자는 논의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²³⁾

다. ICSID 중재판정 취소 절차

1) 개요

ICSID 협약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비상설 기구인 취소위원회를 통한 취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²⁴⁾ ICSID 체제는 협약 내에 판정의 해석, 재심, 취소에 관한 조항을 모두 구비한 '자기완결적' 시스템으로,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각국 국내 법원의 개

procedures.

21)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LCIA Case No. UN3467, Award (1 JUL 2004), para.11.

22) 강병근,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취소와 중재지 법원의 관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2006. 8.), 151면.

23) Susan D. Franck, The Legitimacy Crisi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Privatizing Public International Law through Inconsistent Decisions, (2005) 73 Fordham L. Rev. 1521, 1617-1625.

24)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즉, ICSID 협약은 자체 취소위원회의 결정 이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사법적 불복도 허용하지 않는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협약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은 당사자에게 즉각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협약이 정한 절차 외의 상소나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²⁵⁾ 이에 따라 모든 체약국은 ICSID 판정을 자국의 최종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승인하고 집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결과적으로 ICSID 중재판정에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협약 제52조에 규정된 제한적 사유에 근거하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뿐이다. 이때 취소신청은 제52조 제1항에 명시된 5가지 절차적 사유로 엄격히 제한되며,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 적용의 착오와 같은 실체적 쟁점은 심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취소 절차는 원 판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무효화 절차일 뿐, 판정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상소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²⁶⁾

2) 중재판정 취소사유

ICSID 협약 제52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엄격히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의 사유를 근거로 사무국장에게 판정의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구체적인 사유로 (i) 판정부 구성의 부적절성: 판정부가 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ii) 명백한 권한유월: 판정부가 자신의 권한 범위를 명백히 초과하여 판단한 경우, (iii) 중재인의 부패: 중재인에게 부정이나 부패 행위가 있었던 경우, (iv)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 기본적 절차 규칙을 위반하여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v) 판정 이유의 누락: 판정문에 결론에 이르게 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시한다.

이처럼 ICSID 협약상의 취소사유는 ‘제한적 열거 사유(exhaustive list)’로서, 명시된 다섯 가지 외의 사유에 의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문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제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개별 사건의 취소위원회 결정례(jurisprudence)를 통해 확립되어 왔다. 아울러 조문 내 “하나 이상의 사

25) ICSID 협약 제53조 제1항에서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본 협약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소나 또는 기타 구제수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관계 조항에 따라 집행이 유예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정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ICSID 협약 제50조 내지 제52조에 의한 중재판정을 해석, 재심 또는 무효절차 이외에 어떠한 불복절차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26) Van den Berg, A. J. (2014). Should the setting aside of the arbitral award be abolished?. ICSID Review, 29(2), 269.

유로”라는 명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신청인은 각 사유를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원용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3) 취소위원회에 의한 취소

ICSID 취소위원회는 계약국이 선정한 패널 중 운영이사회 의장이 지명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시되는 일반 중재판정부 구성과 달리, 취소위원회 구성에는 당사자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위원 수 또한 3인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위원장 선임에 관해서는 협약이나 규칙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선임된 3인의 위원들이 상호 협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²⁷⁾

이렇게 구성된 취소위원회는 각 사건에서 청구된 사유가 제한적 열거 규정인 제52조 제1항에 엄격히 부합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다만, 실무상 취소위원회와 당사자들은 명문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소사유를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중재판정부가 협약 제42조 제1항에 따른 준거법 적용을 오판한 경우, 법 적용 오류 자체는 명문의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명백한 권한유월’로 치환하여 취소를 주장한다. 또한, 협약 제48조 제3항에 따라 판정부가 제기된 쟁점을 누락한 경우에도, 이를 직접적인 사유로 삼는 대신 ‘본질적인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에 포함시켜 논리를 전개한다. 이러한 실무적 흐름은 경직된 취소사유와 실질적 정의 실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법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3. 중재판정 취소 결정 및 효과

가. 취소의 범위

UNCITRAL 모델법 및 각국의 중재법은 중재판정 취소 결정 시 그 구체적인 취소 범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각국 법원의 실무적 판단을 살펴보면, 그 운용 방식은 ICSID 협약 체제와 사실상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ICSID 협약은 제52조 제3항 후단에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를 근거로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위원회의 결정 유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무상 결

27) 김용일,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9권(2016. 2.), 551면.

정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기각 결정이다.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전면 기각하고 원 판정의 유효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부분 취소이다. 취소 사유가 판정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될 경우, 해당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취소하는 결정이다. 셋째, 전부 취소이다. 취소사유가 판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분적이지 않을 경우, 중재판정 전부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결정이다. 넷째, 재량적 기각이다. 판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존재하더라도, 취소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그 위반의 정도가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ICSID 취소위원회는 위반 사유의 성격과 판정 내용의 가분성 여부를 엄격히 따져, 판정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특정 쟁점에 국한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유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 취소의 효과

UNCITRAL 중재규칙에 기반한 중재판정은 중재지 국가의 국내법과 뉴욕협약의 규율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중재지 법원에 의해 판정이 취소될 경우, 그 법적 효력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중재지 국가 내에서의 실효적(失効的) 효과이다. 판정 취소의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중재지 관할권 내에서 해당 판정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중재판정은 ‘소급적으로 무효화’ 되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해당 국가 내에서는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강제집행도 불가능해진다. 둘째, 제3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 거절 효과이다.²⁸⁾ UNCITRAL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은 뉴욕협약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e)호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중재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판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승인 및 집행을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재지에서의 취소판결이 해당 중재지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집행지 법원에서 해당 판정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됨을 의미한다.²⁹⁾

ICSID 협약 제52조에 따라 중재판정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주요 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정의 소급적 무효화이다. 취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해당 중재판

28) 강수미,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 32권(2018. 12.), 106면.

29)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국제사법연구, 제31권 제1호(2025. 6.), 343면.

정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취소된 판정은 더 이상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며, 판정 내용이 가졌던 확정력 역시 소멸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귀한다. 둘째, 집행력의 원천적 차단이다. ICSID 협약 제54조에 의거하여 회원국은 ICSID 판정을 자국의 최종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으나, 판정이 취소되면 이러한 집행을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 특히 ICSID 판정은 뉴욕협약이 아닌 협약 자체의 체제 내에서 집행되므로, 취소된 판정을 제3국에서 승인·집행하려는 시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다만, 판정의 내용 중 일부만이 취소된 경우, 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당사자를 구속한다.³⁰⁾ 즉, 관할권, 본안 책임, 손해배상액 등 각 쟁점이 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 부분 취소가 허용되고, 이 경우 당사자들은 취소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머지 이미 확정된 부분은 다시 다룰 수 없다. 부분 취소된 경우, 사실상 중재판정을 변경하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는 *Occidental v. Ecuador* 사건의 취소 결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에콰도르 정부의 석유계약 해지에 대해 약 17억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으나, 취소위원회는 판정부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Occidental*이 제3자에게 양도한 지분 부분에 대한 배상액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배상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분 취소하였다. 그 결과 에콰도르가 지급해야 할 원금은 약 10억 달러로 감소했다.³¹⁾ 이처럼 취소위원회는 판정을 직접 ‘수정(modify)’할 권한은 없으나, 판정 근거의 일부를 취소함으로써 실무적으로는 판정 금액이 조정되는 법적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4. 중재 재신청

가.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재신청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재중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중재합의의 효력 유지 여부와 판정 취소의 구체적 사유에 따라 재신청 가능성이 결정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판정 취소 시 그 기초가 된 ‘중재합의’의 소멸 여부이다. 통상적으로 중재판

30) Gaillard, E. (1999). The enforcement of awards set aside in the country of origin. *ICSID Review*, 14(1), 28.

31)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Case No. ARB/06/11, Decision on Annulment of the Award (2 Nov 2015), paras.586-589.

정이 취소되더라도 투자협정 등에 기반한 중재합의는 판정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속하거나 부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³²⁾ 그러나 취소의 사유가 중재합의 자체의 ‘무효 또는 부존재’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판 청구의 법적 근거가 소멸하므로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취소사유에 따른 주요 재신청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의 경우이다. 중재인 선정 방식의 오류나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판정이 취소된 때, 당사자는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둘째,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일의 경우이다. 중재판정부가 합의 범위를 초과하여 판단한 때, 당사자는 중재 권한 내의 사항에 한하여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셋째, 중재적격(arbitrability)이 부재한 경우이다. 분쟁 자체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해당 분쟁은 중재가 아닌 국내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

한편, UNCITRAL 중재규칙에 기반한 중재판정이 취소될 경우, 재신청 중재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사건으로 취급된다. 기존 중재판정부는 판정 선고와 동시에 그 임무가 종료되므로, 재중재를 위해서는 중재판정부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한다. UNCITRAL 모델법을 전면 수용한 우리 중재법의 경우, 중재판정 취소 후의 재신청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의 전체적인 구조와 일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중재합의가 유효한 재신청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재합의의 독립성이다. 중재합의의 독립성 원칙에 따라 판정이 절차적 하자 등으로 취소되더라도, 그 기초가 된 중재합의는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는 한 독자적으로 존속한다.³³⁾ 둘째, 중재법 제9조에 의해 소의 제기가 불허되는 부분이다.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하고, 따라서 판정 취소로 분쟁이 미결 상태로 회귀하더라도 유효한 중재합의가 현존하는 이상, 당사자는 다시 중재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셋째, 중재법 제35조에 의한 확정력의 소멸이다.³⁴⁾ 중재판정이 취소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중재합의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한, UNCITRAL

32) Grant, T. D. (2007).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English Courts.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56(4), p.872.

33) Osmanov, F. A. Concept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Doctrine of Separability. *ELMİ TƏDQİQAT*, 72., p.74.

34) 이창현, “중재판정 취소 및 승인집행 절차에서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실무상 쟁점들”, *국제사법연구*, 제31권 제2호(2025. 12.), 189면.

체제에서도 재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판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심리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나. ICSID 협약에 의한 중재의 재신청

ICSID 협약 제52조 제6항은 중재판정 취소 시,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분쟁을 새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규칙 제55조 제1항은 신청 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취소나 반대 청구가 빈번한 실무적 특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재신청 권한이 부여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재심리의 범위와 관련하여, 중재판정이 일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한해 서만 중재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ICSID 중재규칙 제55조 제3항은 신규 판정부가 원 판정 중 취소되지 않은 부분을 재심리할 수 없음을 명시하여 심리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력을 유지하며 신규 판정부를 구속하므로, 당사자는 이전 절차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할 수 없다. 다만, 원 판정부가 심리 중 판단을 누락했던 사항이나 판정 선고 이후 발견된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신규 판정부의 판단이 허용된다. 절차적 측면에서 ICSID는 UNCITRAL 체제와 달리 재회부 과정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중재규칙 제55조에 의거하여 재회부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대상 판정을 특정하고 회부할 분쟁 범위를 상세히 설명한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무국은 접수 후 당사자들에게 원 판정부와 동일한 수 및 방식에 따라 중재인을 재구성하도록 요청한다. 특히 제55조 제4항은 재회부 사건에도 일반적인 중재 개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규 판정부 구성이 원 판정부와 동일하게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있다.

5. 소결

중재판정이 취소될 경우, UNCITRAL 모델법과 ICSID 협약 두 체제 모두 소급적 '무효화'를 원칙으로 한다. 중재판정의 확정력은 소멸하며, 집행지 국가의 법원은 뉴욕협약 또는 ICSID 협약에 따라 해당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주목할 점은 중재판정 취소 이후의 '재중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비효율성이다. 양 체제 모두 판정

이 취소되면 기존 판정부의 임무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다시 구성하여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해야 한다. 비록 ICSID 중재규칙 제55조가 재회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일부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판정의 확정력을 인정하여 심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재판정부의 전면적인 재구성’이라는 절차적 비용은 여전히 당사자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년간 지속된 복잡한 ISDS에서 판정부의 작은 절차적 실수로 인해 전체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은 중재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결론적으로, 현행 ISDS 취소제도는 ‘종국성 보장’과 ‘절차적 공정성 감시’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개별 국가 법원의 상이한 판단으로 인한 통일성 결여, 그리고 취소 후 재회부 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효율성은 현 체제의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III.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절차 분석

1. 의의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중재지이며, 특히 런던은 해운, 보험, 금융 및 국제 상사분쟁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제중재에 관한 보고서에³⁵⁾ 따르면 런던은 싱가포르, 홍콩, 파리 등을 제치고 매년 ‘최고 선호 중재지’로 선정되고 있으며, 영국법 또한 국제 계약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준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런던이 중재지로서 강력한 매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영미법(common law) 판례의 권위와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성문화한 세련된 법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보적 위상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법적 토대는 1996년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이다.³⁶⁾ 본 법은 중재절차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성과 사적자치 원칙을 극대화하여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사법부가 중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 및 조력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35) Queen Mary University, 「2025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The Path Forward: Realities and Opportunities in Arbitration’」, 2025, p. 6.

36) 영국은 2025년 개정 중재법(Arbitration Act 2025)을 발표하였고, 주요 개정 내용은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명문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중재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약식판정 권한 등 절차 규정을 강화한 점이다.

특히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취소 및 불복 절차는 영국 중재법의 철학과 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국의 불복 제도는 대륙법계 국가나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여타국 법제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과 실무적 유연성을 지닌다. 모델법 채택 국가들이 사법적 개입을 극도로 제한하며 중재와 법원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는 배제적 접근을 취한다면, 영국법은 사법적 감독을 중재판정의 신뢰도와 법적 완결성을 보증하는 일종의 '보완적 안전장치'로 활용한다. 이는 관할권 문제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엄격한 요건 하에 법률문제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는 등 모델법 체계와는 다른 독창적인 논리 구조를 보여준다.

2. 중재판정 취소사유 및 절차

가. 중재판정 취소사유

1)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부재로 인한 취소

영국 중재법 제67조는 중재판정부의 '실질적 관할권'에 결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항 (a)호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권 유무에 대해 내린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개입을 허용한다. 이는 우리 중재법 제17조 제6항과 유사하며,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 심사권을 보장하는 일종의 선결적 판단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1항 (b)호는 판정부가 실질적 관할권이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에 관한 판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가 해당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재합의의 유효한 존부, 중재판정부 구성의 적법성, 또는 중재합의의 범위를 일탈한 판단 여부를 다투는 가장 근본적인 사법적 구제 수단이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우선 판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판정을 '유지'하며, 관할권의 범위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 판정을 '변경'한다. 또한 관할권 흠결이 명백하여 판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게 된다. 특히 여기서의 판정 '변경' 권한은 판정의 효력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넘어 법원이 실무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영국법 특유의 장치로 평가된다.

2) 중대한 절차적 하자

영국 중재법 제68조는 중재 절차상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serious irregularity)’를 근거로 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제도이다. 본 조항은 UNCITRAL 모델법상의 ‘절차적 하자’ 사유와 유사한 외견을 갖추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절차적 하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substantial injustice)’이 초래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엄격한 가중 요건을 부과한다. 제68조가 규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법에 명시된 9가지 사유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a) 판정부의 일반적 의무 위반, (b) 권한 초과, (c) 합의된 절차 미준수, (d) 제기된 쟁점에 대한 판단 누락, (e) 지정 기관의 권한유월, (f) 판정 효과의 불확실성 또는 모호성, (g) 사기 및 공서양속 위반, (h) 판정 형식 요건 미비, (i) 기타 인정된 절차적 하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유들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실제적인 적용 범위는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례와 유사하게 법원의 해석과 재량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 일례로 제33조에 규정된 ‘공정한 판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판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제68조 운용의 핵심은 영국 중재법의 입법 배경과³⁷⁾ 실제 판례에서 확립된 엄격한 기준을³⁸⁾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영국 법원의 보수적인 태도에 있다. 법원은 본 조항을 중재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되는 안전장치로 운용한다. 중재판정부의 판단 오류나 법적 추론의 미흡함만으로는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않으며, 중재절차가 정의의 관념에 반할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당사자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비로소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3) 법률문제에 관한 판단 오류

영국 중재법 제69조는 중재판정에 나타난 법률문제에 관한 사실상의 ‘상소’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법제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는 중재판정부의 법리적 오류를 취소사유로 인정하고 법원이 이를 직접 교정하겠다는 취지로, 외견상 법원이 중재 절차의 실질적

37) 영국 중재법 제정 당시 기초가 된 ‘DAC 보고서(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 Report)’는 제68조를 설계하며 이 조항이 “판정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38)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의 실제 실무 통계를 보면 제68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수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다. 매년 수많은 이의신청이 제기되지만, 실제로 판정이 취소되거나 환송되는 경우는 연간 한두 건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출처: Essex Chambers, “Arbitration Act 1996: Section 67 and section 68 challenges in the English Commercial Court”, 29th May 2025)

인 심급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영국 중재법이 보유한 가장 독보적인 특징 중 하나로, 중재의 ‘최종성’과 사법적 ‘정확성’ 사이의 정교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항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지닌다. 실제 실무에서는 상당수의 국제중재 당사자들이 분쟁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상소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ICC나 LCIA와 같은 주요 중재기관의 규칙을 채택할 경우 해당 규칙 내 상소권 포기 간주 조항에 의해 제69조의 적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도 한다.

제69조에 따른 상소 절차는 매우 엄격한 요건과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소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 시 제69조를 배제하지 않았어야 하며, 모든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없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소를 허가한다. 첫째, 법률문제에 한정되어야 한다. 상소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문제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불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둘째, 권리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률문제에 대한 결정이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중재판정부 오류의 명백성 및 중대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obviously wrong)’ 되었거나, 해당 사안이 일반적인 공익적 중요성을 가져 법원의 판단이 긴요한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든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절해야 한다. 결국 제69조는 영국 중재법이 중재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체법적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해 둔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라고 할 수 있다.³⁹⁾

나. 취소 절차의 관할법원 및 심리방식

1) 중재지(Seat)를 기초로 한 배타적 관할권

영국 중재법 제2조 제1항은⁴⁰⁾ 법원이 중재판정의 취소나 상소 절차를 관할하기 위한 대

39) Yalabik, F. T. (2021, January). The Impact of the Seat of Arbitration on Judicial-Interference: Do Sections 67, 68 and 69 of the English Arbitration Act 1996 Regarding Challenges of Awards Make London an Attractive Hub?. In *Annales de la Faculté de Droit d'Istanbul* (No. 70). Istanbul University, p. 267.

40) 영국 중재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재법 적용의 관할에 대해 “The provisions of this Part apply where the seat of the arbitration is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제로 ‘중재지’가 잉글랜드 또는 웨일스에 소재해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중재지가 자국 영토 내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판정에 대한 사법적 감독권을 행사하는 엄격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중재심리가 런던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재지가 외국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영국 법원은 해당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리할 관할권이 없다. 반대로 중재지가 런던으로 지정되었다면, 실제 심리가 제3국에서 진행되었다더라도 영국 법원은 제67조내지 제69조에 따른 전적인 관할권을 보유한다. 이는 ‘중재지’가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중재판정의 취소를 다루는 관할 법원은 고등법원(High Court)이다. 지방법원이 1심을 담당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영국은 중재사건이나 규모가 큰 상사분쟁의 소송사건에 대해 1심 단계부터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영국의 고등법원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1심 법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중재 관련 사건은 고등법원 산하의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에서 전담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다. 상사법원에는 중재 실무와 국제거래법에 능통한 전문 판사들이 배치되어 있어, 중재판정의 취소나 관할권 문제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사법적 판단을 제공하고 있다.

2) 완전히 ‘새로운’ 심리 진행

중재법 제67조는 중재판정부 자체가 해당 분쟁을 심리할 적법한 권한이 없었음을 다루는 관할이다. 당사자는 중재합의의 무효, 판정부 구성의 부적법, 합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 등을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법원의 심리방식이다.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내린 관할권에 관한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여 관할권 유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⁴¹⁾ 이는 국가 사법권을 배제하는 중재의 근거인 ‘합의’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법원의 고유한 권한임을 의미한다.

3) 제한적인 관할권 행사

중재법 제68조에서는 중재판정부가 공정하게 판단해야 할 일반적 의무를 위반하거나,

41) Penades, M., & Tent, P. (2018).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by National Courts: What Level of Review?. Fach Gómez K, López Rodríguez AM (eds), 60, p. 2.

권한을 일탈하여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법원이 개입하며, 이 영역에서 법원의 관할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된다. 법원은 중재인이 내린 결론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정의의 최소기준을 준수했는지만을 살펴보게 된다. 이는 법원이 중재의 실체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취소 결정의 방식 및 항소절차

가. 취소 결정의 방식

영국 중재법 체계에서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취소소송이나 제69조의 상소가 제기될 경우, 법원은 사안을 심리한 후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영국 법원은 판정을 단순히 '유지'하거나 '파기'하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 중재절차의 연속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각적인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판정의 '확인'이다. 관할권, 절차적 정당성, 법률 해석 등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해당 중재판정은 즉시 확정적인 효력을 유지하며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가 된다. 둘째, 판정의 '취소' 및 '무효 선언'이다. 중재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력한 조치이다. 판정이 취소되면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소멸하며, 판정부의 관할권이 원천적으로 부재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판정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경우 유효한 중재합의가 현존한다면 당사자는 재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확인 및 취소 절차는 여타 국가의 법원이나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 방식과 유사하다. 셋째, 판정의 '변경'이다. 영국 중재법 특유의 제도로써, 법원이 중재판정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결정이다. 주로 제67조나 제69조에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법리 해석의 오류로 인해 배상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직접 금액을 정정하여 판정을 확정 지음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넷째, 판정의 '환송'이다. 영국 법원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방식으로,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내 재심리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는 특정 쟁점의 누락이나 절차적 미비 등 법원이 지적한 하자에 대해 중재판정부 스스로 치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고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영국 중재법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나.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영국 중재법 제67조 제4항은 관할권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으로 항소하고자 할 때, 반드시 원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항소 제도는 중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중재의 신속성 및 최종성을 보호한다. 중재제도의 본질적 이점은 분쟁의 조속한 단심 해결에 있다. 만약 중재지 법원의 취소판결에 대해 무제한적 항소를 허용한다면, 패소 당사자가 이를 절차 지연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전제 조건으로 설정함으로써,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없는 한 1심 법원의 판단을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둘째, 사법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낭비를 방지한다. 이미 중재판정부와 1심 법원이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에 대해 무분별하게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사법 행정의 낭비를 초래한다. 법원은 일종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며, 상급법원이 다룰 가치가 있는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나 ‘명백한 부당성’이 인정되는 사건만을 선별한다. 이를 통해 상급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하를 경감시키고, 승소한 당사자가 불필요한 소송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중재지 전문 법원의 권위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은 중재 전문 판사에 의한 고도의 전문적 판단으로 간주된다. 항소 허가 제도는 이러한 원심판결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사법적 권위를 확립하는 역할을 한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원심법원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타당한 근거를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국제중재 이용자들에게 “영국 법원의 결정은 쉽사리 번복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4. 관련 사례 분석

가. 사건 개요

영국 고등법원의 GPF v. Poland 사건 판결은⁴²⁾ ISDS에서 중재지의 법원이 중재판정부

42) GPF GP S.à.r.l v. Republic of Poland, SCC Case No. V 2014/168, 2, Judgment of the UK High Court on the Set Aside Application, [2018] EWHC 409 (Comm).

의 관할권을 어떻게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⁴³⁾ 본 사건의 투자자인 GPF(Griffin)는 룩셈부르크 회사로 폴란드 바르샤바 중심부의 토지에 대한 99년 기간의 '영구 용익권(perpetual usufructuary rights)'을 보유한 현지 법인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투자자는 2007년 당국의 권고와 승인하에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폴란드 보존 당국이 입장을 번복하여 개발 허가를 거부하고 해당 부지를 역사적 기념물로 등록하는 등 사업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바르샤바 시 정부는 개발 시한 미준수를 이유로 용익권 계약 해지를 청구하였고, 2014년 바르샤바 고등법원은 이 해지를 확정하였다. 투자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로 인해 투자에 큰 손실을 입었고, 이는 벨기에·룩셈부르크-폴란드 간 BIT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중재를 제기하였다.⁴⁴⁾

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판정

영국 고등법원 판결문에 기초하여 2017년 중간 중재판정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당시 BIT 문언을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투자자의 청구 범위를 대폭 축소하려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할권의 근거 조항: BIT 제9.1(b)조의 엄격 해석

중재판정부는 본 분쟁의 관할권 유무를 결정하는 핵심 잣대로 BIT 제9.1(b)조를 검토하였는데, 해당 조항은 중재 대상이 되는 분쟁에 대해 “제4조(수용)의 위반에 관한 분쟁,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국가 조치에 의한 재산권 및 권리의 박탈 또는 제한에 관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이 문구를 ‘수용의 발생’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였는데, 즉, 투자자가 아무리 폴란드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분쟁이 종국적으로 ‘수용’이라는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중재판정부가 이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투자자가 제기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을 오직 ‘수용’ 하나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3) UNCTAD 통계에 따르면,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해 내려진 중재판정 중 영국 법원에서 취소절차가 진행된 사건 중 부분 취소결정을 받은 사건은 Gold Pool v. Kazakhstan, RAKIA v. India, World Wide Minerals v. Kazakhstan (I), GPF v. Poland 등 4건이고, 전체 취소 결정을 받은 사건은 Diag and Štáva v. Czechia, World Wide Minerals v. Kazakhstan (II) 등 2건이다.

44) [2018] EWHC 409 (Comm), para. 5.

2) FET 청구의 배제

투자자인 GPF는 폴란드 정부가 사업 허가를 반복하고 개발을 방해한 것이 BIT 제3.1조의 ‘공정·공평 대우(Fair and Equitable, FET)’ 위반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중재판정부는 이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제하였다. 첫째, 문언적 한계이다. BIT 제9조의 중재 대상 열거 항목에 제3조(FET)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FET에 의한 청구의 독립성을 부인하였다. 중재판정부는 FET 위반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중재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그것이 ‘수용’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정황 증거로서만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불공정하게 대우하였다는 주장 그 자체는 관할권 밖이며, 그러한 불공정한 대우가 결국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하였다는 맥락 안에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었다.⁴⁵⁾

3) 2014년 폴란드 법원 판결로의 ‘시점적 국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중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관할권의 시점을 2014년 폴란드 국내 법원의 판결로 제한한 것이다. 투자자는 2007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방해와 보존 당국의 결정들이 ‘일련의 과정’으로서 자산을 잠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영구 용익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시점은 2014년 법원 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사실에만 집중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는 2014년 판결 이전의 행정적 조치들이나 당국의 방해 행위들은 그 자체로 수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14년 판결에 이르게 된 ‘배경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 이전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2014년 법원 판결이 국제법상 ‘수용’에 해당하는가”라는 매우 협소한 범위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 투자자는 수년간 겪은 수많은 부당한 조치들을 원용하여 각각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2014년 판결이 ‘수용’이라는 점 하나만을 입증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또한, 2014년 이전 조치들이 관할권에서 빠지게 되면, 그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결국 중재판정부는 “BIT의 중재조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폴란드 정부에 유리한 ‘최소한의 관할권’만을 인정한 것이었다.⁴⁶⁾

45) Ibid., paras. 37-41.

46) Ibid., paras. 42-45.

다. 영국 법원의 취소판결

1) 법원의 심리 원칙

영국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존중하거나 그 결론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영국 중재법 제67조에 따른 관할권 이의제기는 법원이 스스로 증거와 법리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판정’이 아니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할 ‘법적 쟁점’으로 취급하였다.⁴⁷⁾

2) BIT 제9.1(b)조의 해석: FET 청구의 관할권 포함 여부

법원의 판결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루어진 부분은 본 건 BIT 제9.1(b)조의 문언 해석이다. 중재판정부는 해당 조항이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에 한정되므로, FET 위반과 같은 일반적인 BIT 위반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조항의 후단 문구인 “수용과 유사한 결과로 이어지는(lead to) 국가 조치”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법원은 “lead to”라는 표현이 미래지향적이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임에 주목하였다. 법원은 만약 당사국들이 오직 ‘이미 완성된 수용’만을 중재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면 “lead to”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부당한 행정 지연, 자의적 허가 거부 등 FET 위반행위 등 국가의 특정 조치가 그 자체로 즉각적인 수용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낳았다면 그 ‘조치들’ 역시 제9.1(b)조에 따른 중재 관할권 안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투자자가 주장하는 FET 위반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영구 용익권’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고 해지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되었다면, 중재판정부는 해당 FET 위반 여부를 심리할 관할권을 가진다고 확정하였다.

3) ‘점진적 수용’의 전면적 인정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수용의 시점을 2014년 폴란드 국내 법원의 판결로만 국한시킨 것을 법리적 오류라고 판단하였다. 중재판정부는 2014년 이전의 조치들을 단순한 ‘배경 사건’으로 치부했으나, 법원은 국제법상 확립된 ‘점진적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의 법리

47) Ibid., paras. 63-65.

를 적용하였다. 점진적 수용이란 단일한 강제 징발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행해진 일련의 행정적·입법적·사법적 조치들이 결합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점진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2007년부터 이어진 폴란드 당국의 방해 행위, 보존 당국의 입장 번복, 개발 허가 거부 등이 2014년 용익권 해지라는 최종적 결과로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된 과정’임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2014년 이전의 조치들은 관할권 밖”이라고 선언한 것은 수용 청구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며, 2007년부터의 모든 사실관계가 중재의 심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⁴⁸⁾

라. 중재판정 취소 및 기존 중재판정부로 환송 결정

법원은 판결문의 결론에서 중재판정부가 “FET 위반 청구나 2014년 이전의 점진적 수용 조치들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를 취소하였다. 또한, 법원은 취소된 문구를 대신하여 중재판정문에 삽입될 새로운 관할권 범위를 직접 작성하였다. 즉, 중재판정부는 “(a) 직접 및 간접 수용과 관련된 모든 사실적 사안 및 조치, (b) 공정·공평 대우(FET) 위반과 관련된 모든 사실적 사안 및 조치에 대해 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중재판정부는 위 사안들을 다루기 위해 본안 단계로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⁴⁹⁾ 즉, 영국 중재법 제67조 제3항에 의해 법원이 직접 관할권의 범위를 확정하여 판정문의 내용을 ‘변경(vary)’하거나 ‘대체(substitute)’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판결문에서 ‘변경’이 아닌 ‘대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의 표현은 실무적으로 사실상 ‘변경’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된다.⁵⁰⁾ 법원이 직접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중재판정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후 사건을 기존 중재판정부로 환송(remit)하였다. 이는 중재판정부에게 “법원이 관할권을 이만큼 넓혀주었으니, 이 범위에 맞춰 본안 심리를 재개하라”는 준강제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관련 판결문 조항을 보면 ‘환송’이라는 단어 역시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다. 판결문 문언상 ‘remit’이라는 단어가

48) Ibid., paras. 73-76.

49) Ibid., para. 144.

50) 법원 판결문 제144항에서는 “In the above circumstances, and for the reasons I have given, I set aside paragraphs 187(ii) and (iii) of the Award (with all consequential amendments to Award) and order that in substitution for those paragraphs of the Award it is declared that...”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이 판결이 환송의 효과를 갖는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판결문 제144항 (iii)호에 삽입된 “The Tribunal will take the necessary step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proceedings towards the liability phase...”라는 문구 때문이다. 법원이 관할권을 확정된 후, 중재판정부가 본안 심리를 계속 진행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기존 중재판정부가 남은 심리를 완수하도록 해당 사건을 다시 기존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낸 실질적인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학술적·실무적 설명 과정에서 이를 ‘환송’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즉, ‘환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중재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확정된 범위로 심리를 계속하라”고 명령하여 실질적인 계속 심리를 보장한 것이다.

마. 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영국 법원은 스스로 판정을 ‘변경’하여 결론까지 내릴 수 있었으나, 굳이 ‘환송’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본안 심리는 당사자들이 신뢰하여 선택한 중재인들의 역할로 남겨두겠다는 ‘사법적 자제’를 보여준다. 법원은 오직 법적 관할권만 바로잡고, 그 안에서의 본안에 대한 판단은 다시 중재판정부에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환송 없이 판정을 ‘취소’만 하였다면, 폴란드 정부는 관할권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며 절차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원은 환송을 통해 기존 중재판정부가 즉시 심리를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중재절차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억제한 것이다. 이 판결은 UNCITRAL 규칙을 따르는 ISDS 사건에서 중재지로 런던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이점을 보여준다.⁵¹⁾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오류를 방관하지 않고 단호하게 검토하면서, 그 해결 방식은 매우 실용적이고 친중재적인 절차로 가져감으로써 국제투자중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1) 중재판정부 역시 중재지를 런던으로 선정함으로써, 영국 법원에서 취소소송 후 ‘환송’에 대한 중재사건의 관할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인들 역시 런던을 ‘중재지’로 선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V. 영국의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 중재판정 취소절차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경로의 다원화

1) 실질적 관할권에 대한 이의

영국 중재법 제67조는 중재판정부가 해당 분쟁을 심리할 적법한 권한을 결여했음을 다투는 조항으로, 중재합의의 존부 및 유효성, 판정부 구성의 적법성, 합의 범위를 일탈한 판결 여부 등을 주요 사유로 한다. 이때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스스로 내린 관할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증거와 법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는 국가 사법권을 배제하는 중재의 근간인 ‘당사자 합의’의 존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법부의 고유한 권능이라는 법철학에 기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UNCITRAL 모델법을 채택한 국가들의 사법감독 방식과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다.⁵²⁾ 이는 중재지 법원이 판정부의 권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도’의 차이를 상징한다.

UNCITRAL 모델법 체계를 따르는 대부분의 국가는 제16조 제3항 및 제34조에 의거하여 관할권을 심사할 때,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일종의 ‘기록’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중재 단계에서 현출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판정부의 판단에 명백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영국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하여, 중재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거나 증인신문을 독자적으로 재실행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판정부보다 상급 기관으로서 그 결정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관할권이라는 법적 사실을 확정하는 ‘최초의 기관’과 같이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중재의 보편적 원칙인 ‘Kompetenz-Kompetenz’에 대해 두 체제는 모두 긍정하나,⁵³⁾ 그 결정의 최종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해석을 견지한다. UNCITRAL 모델법 채택 국가들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결정을 가급적 존중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이는 ‘친중재적

52) Chan, D., & Yuying, Z. (2025). De novo review of arbitral awards. In Elgar Concis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pp.137-139.

53) Park, W. W. (1996). The Arbitrability Dicta in First Options v. Kaplan: What Sort of Kompetenz-Kompetenz Has Crossed the Atlantic?. Arbitration International, 12(2), 139.

(pro-arbitration)' 기조 아래, 명백한 법리적 오류가 없는 한 판정부의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중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반면, 영국 법원은 “중재인이 자신의 권한 범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관할권은 당사자 간 합의라는 ‘계약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해당 합의의 실존 여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국가 법원의 고유한 사법 영역이라는 논리다. 이에 따라 영국 법원은 판정부의 논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사법적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GPF v. Poland* 사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만약 본 사건이 일반적인 모델법 체계하에서 다루어졌다면,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BIT 조항을 나름의 논리로 해석하여 관할권을 제한한 결정을 존중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영국 고등법원은 중재판정부의 해석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법원이 직접 BIT 조항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결과 판정부가 관할권을 부정했던 *FET* 청구 등을 관할권 범위 내로 강제로 편입시켰다.

결론적으로 UNCITRAL 모델법 국가들이 중재절차의 완결성을 위해 법원의 개입을 자제한다면, 영국 중재법은 법적 정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권 문제에 한하여 사법부가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를 취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관할권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의 규제 권한이 개입된 ISDS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영국 법원의 정밀한 사법 감독 기능을 전략적 대안으로 활용하게 된다.

2) ‘중대한 절차상 하자’의 엄격한 적용

영국 중재법 제68조는 방어권 침해, 권한유월, 판정부의 편향성, 사기에 의한 판정 등 중재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를 규율한다. 본 조항의 핵심은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하자가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했음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사소한 절차적 흠결을 빌미로 판정의 중국성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고도의 안전장치이다. 이러한 사법 통제 방식은 UNCITRAL 모델법 체계와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우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절차적 하자가 판정 취소로 이어지기 위해 요구되는 ‘피해의 정도’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가에 있다. UNCITRAL 모델법 제34조 제2항은 하자의 ‘발생’ 사실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실무적으로 하자의 존재가 입증되면 취소 가능성이 폭넓게 인정될 소지가 있다. 반면, 영국 중재법은 하자의 존재만으로는 취소가 불가

능하며, 신청인은 “해당 하자가 없었더라면 판정 결과가 실질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절차적 완벽주의에 매몰되기보다 ‘실질적인 결과의 정의’를 우선시함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법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의 종류를 매우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사법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한다. 포괄적인 문언을 사용하여 법원이 ‘공공질서’ 등을 근거로 개입할 여지를 넓게 두는 모델법과 달리, 영국 중재법 제68조 제2항은 (a)부터 (i)까지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사유를 ‘폐쇄적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모든 쟁점을 다루지 않은 경우 등 명시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절차적 실수는 설령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제68조의 구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사법적 감독의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국제 중재지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로 기능한다.

3) 법률문제에 관한 상소

영국 중재법 제69조는 ‘법률문제에 관한 상소’를 허용함으로써 UNCITRAL 모델법 체계와 가장 극명한 철학적 대비를 보여준다.⁵⁴⁾ 모델법 채택 국가들이 중재판정의 ‘최종성’을 절대시하여 실체적 오류에 대한 사법적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달리, 영국법은 ‘법적 정확성’ 또한 중재제도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로 간주한다. 이러한 차별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된다.

첫째, 모델법 체계는 중재를 조속한 분쟁 종결을 위한 합의로 보아 법령 적용의 오류를 중재의 내재적 리스크로 수용하는 반면, 영국 중재법은 중재 역시 법치주의 원칙 하에 법리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중재인의 오판이 정의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영국 사법부의 전통적 태도를 반영한다. 둘째, 영국법은 법리적 검토를 허용하되 무제한적 개입은 차단한다. 제69조에 따른 상소는 판정의 명백한 오류, 일반적 공익과의 관련성, 당사자 권리예의 실질적 영향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상소 허가’를 필수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사법적 정확성과 중재의 신속성 사이의 실용적 절충을 꾀한다. 셋째, 사법 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모델법과 달리, 영국법상의 상소 조항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 가능한 임의규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성이 중시되는 일반 상사중재에서는 상소권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으나, 고도의 법리적 정확성이 요구

54) 강수미,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32권 제1호(2022. 3.), 47면.

되는 해상·건설·금융 분야에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전략적으로 유지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영국 중재법 제69조는 “중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영국의 사법적 확신을 상징하는 장치이다. 이는 모델법 체계가 추구하는 ‘효율적 종결’을 넘어, 고도의 ‘법적 신뢰성’을 제공한다. 특히 복잡한 법리 해석이 관건인 국제 무역 및 투자 분쟁에서 영국이 최선호 중재지로 선택되는 독특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실체법적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이 조항은 영국 중재법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중재판정 취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1) 중재판정의 직접 ‘변경’

영국 중재법상 법원의 중재판정 ‘변경’ 권한은 국제중재 실무에서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사법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는 싱가포르, 독일 등 UNCITRAL 모델법 체계를 채택한 대다수 국가가 판정의 ‘취소’ 또는 ‘유지’라는 이분법적 틀을 고수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일반적인 모델법 체계에서 중재판정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법원은 해당 판정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판정부를 대신하여 직접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기시된다. 중재판정을 사법부가 직접 수정하는 행위는 당사자들이 사적 계약을 통해 중재인에게 부여한 권한을 국가 사법부가 ‘찬탈’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정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취소한 후 당사자들이 재중재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당사자 자치’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영국 중재법 제67조(3)(b), 제68조(3)(c), 제69조(7)(b)는 법원에게 중재판정을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는 중재절차 역시 궁극적으로는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절차적 형식주의보다 실무적이고 종국적인 분쟁 해결을 우선시하는 영국 특유의 실용주의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변경 권한은 특히 계산 착오나 명백한 법리 오해로 인해 배상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 그 진가를 발휘한다. 모델법 국가에서는 판정 전체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재중재를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지만, 영국 법원은 해당 오류를 직접 수정하여 판정을 확정 지음으로써 당사자들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의 낭비로부터 보호한다. 결국 영국의 변경 권한

은 당사자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얻고자 했던 ‘효율적인 분쟁 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사법부가 보완하여 완성하는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영국 중재법상 법원의 중재판정 변경 권한은 단순한 사법통제를 넘어,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천적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사법적 효율성 및 경제성의 제고이다. 방대한 쟁점을 다루는 중재 사건에서 지엽적인 법리적 하자나 관할권 이탈을 이유로 판정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중대한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영국 법원은 하자가 있는 부분만을 정밀하게 수정하는 이른바 ‘외과 수술적 개입’을 통해, 적법한 판단 부분을 보존하고 중재 절차의 유효한 성과를 유지시킨다. 둘째,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및 전략적 지연의 차단이다. 패소 당사자가 사소한 흠결을 빌미로 판정 취소를 유도하여 분쟁을 장기화하려는 소송 전략을 구사할 때, 법원의 변경 권한은 강력한 억제력이 된다. 법원이 관할권 범위를 직접 확정하여 판정문을 재작성함으로써 동일한 쟁점에 대한 재판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기 때문이다. 결국, 영국 중재법의 판정 변경 권한은 ‘중재지로서의 런던’이 보유한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모델법 채택 국가들의 당사자들이 판정 취소 후 재중재라는 불확실한 경로를 우려할 때, 영국법 체제하의 당사자들은 법원의 정교한 사법적 보완을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2) ‘환송’ 명령에 따른 기존 중재판정부의 재심리

영국 중재법상 ‘환송’ 제도는 사법부가 중재판정의 오류나 하자를 발견했을 때, 판정 전체를 취소하여 절차를 무효로 만들기보다 해당 사건을 기존 중재판정부로 다시 돌려보내 하자를 스스로 치유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중재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영국 중재법의 실용주의적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며, 환송 제도의 핵심은 중재의 유지와 연속성이다. 일반적인 국가들의 중재법이 판정의 ‘취소’나 ‘집행 거절’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영국법은 ‘환송’을 최우선적인 구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재판정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중재를 시작해야 하지만, 환송은 기존 중재판정부가 쌓아온 사건 이해도를 활용해서 문제가 된 부분만 바로잡게 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 또한, 법원이 해당 부분에 대해 직접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중재인에게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중재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영국 중재법상 환송 제도는 런던을 세계적인 중재지로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당사자들은 설령 중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영국 법원이 이를 정교하게 바로잡아 중재절차가 중단 없이 완결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된다. 특히 해상이나 건설 분야처럼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산업군에서는, 판정 전체를 뒤엎지 않고도 법률적 정확성만 확보할 수 있는 이 환송 제도를 매우 전략적인 안전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환송 우선 원칙은 중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판정을 완전히 취소해 버리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중재를 시작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겪게 된다. 반면 환송은 기존의 중재판정부에게 특정 하자만을 보완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분쟁해결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policy of upholding awards”라는⁵⁵⁾ 영국의 사법적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중재선진화를 위한 우리 중재법 개정

1) ‘환송’ 및 ‘변경’ 권한 도입을 통한 중재의 ‘비용 효율성’ 극대화

중재산업의 경쟁력은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경제성에 달려 있다. 현행 ‘전부 취소’ 중심의 시스템은 당사자에게 막대한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강요하여 한국 중재의 매력을 저해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환송’ 및 ‘변경’ 제도를 명문화할 경우, 판정의 흠결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즉시 교정할 수 있는 사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한국 사법부의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어, 서울을 최적의 중재지로 선택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재법 내에 법원이 판정을 취소하기 전 환송의 적절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재절차의 연속성을 보존하는 ‘친중재적’ 사법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만약 Elliott 사건에서 영국 법원이 단순 취소 판결만을 내렸다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중재를 재개해야 하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환송 판결 덕분에 기존 중재판

55) 동 정책은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의 모태가 된 ‘Saville Report’(Departmental Advisory Committee on Arbitration Law, DAC Report)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DAC 보고서는 중재법 제정 당시 “법원은 중재절차에 개입함에 있어 극도의 자제(judicial restraint)를 발휘해야 하며, 중재판정의 유효성을 지지(uphold)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중재법 제1조 (c)항의 “In matters governed by this Part the court shall not intervene except as provided by this Part.”에 반영되어 있다.

정부에서 하자가 지적된 부분만을 다시 다룰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막대한 법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⁵⁶⁾ 이러한 영국의 실용적 구제 수단은 한국 중재법이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잘 제시해 주고 있다.

2) 관할권 심사의 ‘실질화’를 통한 법적 정당성 확보

중재절차에서 관할권은 그 효력의 시작과 끝을 결정짓는 핵심적 사안이다. 영국 법원과 같이 관할권의 존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심리방식을 도입한다면, 이는 우리 중재판정의 품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사법부의 엄격하고 세심한 관할권 심사를 거쳐 확정된 판정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그 집행력을 확실히 담보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평판은 단순한 사법 통제를 넘어, 대한민국 중재 브랜드를 고부가가치화 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할권 다툼 시 법원이 신속하면서도 심도 있게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심리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엄격한 사법 감시가 중재절차의 정당성을 뒷받침함으로써, 중재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견인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결국, 사법부의 ‘철저한 확인’은 중재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재시장에서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전략적 투자가 될 것이다.

3) 제한적 ‘법리 상소(opt-in)’ 도입을 통한 ‘전문 중재시장’ 개척

해상, 건설, 금융과 같이 거액의 자본이 투입되는 전문 분야는 중재의 신속성 못지않게 판정의 법적 정확성을 중시한다. 현행 모델법 체계는 실체법적 오류에 대한 사법적 교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런던이 세계 해상·건설 중재 시장을 독점하는 배경에는 당사자 합의 시 법원의 법리 판단을 허용하는 영국 중재법 제69조의 ‘선택적 상소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우리 중재법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절차적 편의를 넘어 한국의 우수한 사법 자원을 중재의 최종 안전장치로 활용한다는 강력한 국가적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다. 법원의 정교한 법리 검토가 보장되는 환경은 고가의 수입료와

56) *Pey Casado v. Chile* 사건의 경우, 1998년 4월 20일에 처음 중재신청이 등록되었고, 이후 중재판정 취소, 중재 재신청, 2차 중재판정 및 취소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2020년 1월 8일 2차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최종 내려지면서 이 사건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는 하였지만, 중재신청에서부터 종료까지 20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었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중재 사건을 서울로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유인이 될 것이다. 이를 실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소권’을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임의규정 방식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중재의 ‘최종성’과 ‘정확성’ 사이에서 당사자들이 각자의 비즈니스 특성에 최적화된 분쟁 해결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4) 소결

중재법 개정이 지향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사법부의 개입 권한을 양적으로 확대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중재’라는 독립적인 분쟁 해결 수단이 ‘법치주의’라는 국가 사법 체계의 거대한 틀 안에서 보다 정교하고 완결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즉, 법원이 중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감시자가 아니라, 중재 판정의 법적 신뢰도를 보완하고 완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 방향의 당위성은 영국 중재법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영국의 중재판정 취소 제도는 단순히 부당한 판정을 파기하는 사후 교정 수단을 넘어, 중재를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제도적 영역 안으로 포섭하여 그 완성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사적자치에 기반한 중재절차에 사법부의 적절한 감독이 결합 될 때, 비로소 판정의 공정성과 법리적 타당성이 확보되며 이는 곧 중재제도 자체에 대한 대중적·국제적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중재법 역시 과거 UNCITRAL 모델법을 기계적으로 수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현실에 맞는 진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영국 중재법이 보여주는 실용적이고도 정교한 사법 감독 체계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법원의 개입을 불필요한 간섭이 아닌 중재 품질관리의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재 당사자들에게 더욱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법적 체계의 고도화는 대한민국이 동북아 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다.

나. 영국식 중재판정 취소제도 도입 시 고려 사항

영국 중재법 상 취소제도 모델 도입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다. 첫째, 중재판정 취소 후 ‘환송’ 시 동일 중재판정부의 편향 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 환송 제도는 기존

에 판정을 내렸던 중재판정부에게 다시 사건을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가장 큰 우려는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기존 결론을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기제이다. 즉, 문제의 본질은 중재판정부가 이미 심리 결과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판정문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 견해를 완전히 백지화하고 공정하게 재심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자칫 ‘형식적인 치유’에 그치거나, 결론은 유지한 채 논리만 보강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중재인의 편파성이 의심되거나 공정한 재심의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같이 환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영국 법원처럼 환송 대신 ‘중재판정 취소 및 새로운 판정부 구성’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법적 재량권을 엄격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송 ‘반복 시(ping-pong effect)’ 절차 지연 및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환송의 본래 목적은 효율성이지만, 잘못 운용될 경우 오히려 사법부와 중재판정부 사이의 ‘셔틀 중재’가 발생하여 절차가 무한정 지연될 위험이 있다. 즉, 법원이 환송을 명령하고, 중재판정부가 다시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다시 그 판정의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환송의 반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중재의 장점인 ‘단심제’에 의한 신속한 해결을 무력화하고 소송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법원이 환송 명령을 내릴 때 심리 기한을 명시하거나, 환송 후 재판정에 대해서는 불복 사유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소한 하자는 법원이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하여 즉시 종결짓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환송 범위와 권한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재판정이 취소된 후 다시 사건이 중재판정부로 돌아갔을 때, 중재인이 어느 범위까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법원이 지적한 부분 외에 기존에 확정되었던 다른 사실관계나 법리까지 다시 검토하는 ‘월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의 지시 사항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실질적인 하자를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환송 결정문에 ‘재심의가 필요한 구체적 쟁점’과 ‘취소된 부분의 한계’를 명확히 적시하는 실무 지침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중재인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구속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 나가며

우리 중재법은 1999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개정을 거치며 UNCITRAL 모델중재법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이러한 수용 과정은 우리 중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시키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였다. 특히 2006년 개정 모델법을 반영한 2016년 개정은 우리 중재제도의 보편적 절차 체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중재산업의 양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6년 개정 당시 제기되었던 우리만의 독자적인 중재법 체계 마련에 대한 고민이⁵⁷⁾ 충분히 결실을 보지 못하고 모델법의 조문을 기계적으로 투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의 우리 중재법은 국제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다른 주요 중재지와 차별화되는 정교한 사법적 완결성이나 실용적 유연성을 보여 주기에는 다목적이고 평범한 체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모델법이라는 최소한의 표준을 넘어, 중재 당사자와 중재인들이 한국을 최적의 ‘중재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제도적 선진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영국 중재법은 우리에게 단순한 제도 이식을 넘어선 철학적 화두를 던져준다. 영국은 모델법의 세계적 확산 속에서도 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국의 판례법적 전통과 실용주의를 결합하여 독자적인 중재법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영국 중재제도의 핵심은 사법부의 개입을 금기시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중재를 ‘법의 지배’라는 큰 틀 안으로 포섭하여 판정의 질적 수준과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 특히 영국법상의 판정 취소 및 사법 감독 제도는 단순히 판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극적 기능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중재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법 체계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통해 정제함으로써, 사적 분쟁 해결 수단인 중재가 공적 정의와 괴리되지 않도록 돕는 ‘조력적 감독’의 과정이다. 이러한 체계는 중재판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중재 제도 전체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구체적 대안은 영국식 ‘환송’ 제도의 능동적 수용이다. 현재 ICSID 체제나 대다수의 모델법 국가들은 판정 취소 시 새로운 판정부를 구성하여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57) 이호원,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 내용”,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2020.), 5면.

를 초래하며 중재의 최대 장점인 신속성을 저해한다. 반면, 영국은 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기존 판정부에 다시 보내 보완하도록 하는 환송 제도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환송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실용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는 경제성과 효율성이다. 사건의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기존 판 정부가 특정 오류를 수정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지연을 최소화한다. 둘째는 중재인의 전문성 존중이다. 사법부가 판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보다 중재인에게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중재인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중재의 자율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 인프라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적 법적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국제투자중재 등 복잡성이 증대되는 현대 국제경제 질서에서 중재판정의 오류나 절차적 하자에 대응하는 정교한 법적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은 국가적 중재 역량을 증명하는 척도가 된다. 영국 중재법의 선진적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이식하는 작업은 단순히 외국법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중재법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국내외 사용자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는 제도적 결단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신뢰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국제중재 지형에서 그 영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병근, “국제투자중재판정의 취소와 중재지 법원의 관할권”, 국제법학회논총, 제51권 제2호(2006. 8.)

강수미, “외국법원에서 취소된 중재판정의 뉴욕협약상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 32권(2018. 12.)

_____, “중재판정 취소사유를 확장한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고찰”, 중재연구, 제32권 제1호(2022. 3.)

김용일, “ICSID 중재판정의 ‘취소절차’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69권(2016. 2.)

목영준, 「상사중재론」, 박영사, 2001.

석광현,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의 취소”, 국제사법연구, 제31권 제1호(2025. 6.)

오현석, “ICSID 취소결정의 최근 동향 및 사례 분석”,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2호(2022. 6.)

_____, 「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오현석·이재우·장석영, 「국제투자중재실무」, 박영사, 2022. 9.

이창현, “중재판정 취소 및 승인집행 절차에서의 국제사법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실무상 쟁점들”, 국제사법연구, 제31권 제2호(2025. 12.)

이호원, “국제중재판정의 취소사유의 확장 또는 제한”, 국제거래법연구, 제21권 제2호(2012. 12.)

_____, “2016년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2020.)

정선주,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대상”, 민사소송, 제26권 제1호(2022. 2.)

한창완, “국제투자중재 판정의 취소 -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법무연구, 2022년 제3호

2. 외국문헌

Chan, D., & Yuying, Z. (2025). De novo review of arbitral awards. In Elgar Concis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Christoph H. Schreuer, ICSID Annulment Revisited, Legal Issues of Economic Integration 30(2), 2003.

Gaillard, E. (1999). The enforcement of awards set aside in the country of origin. ICSID Review, 14(1).

Grant, T. D. (2007).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English Courts.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56(4).

Gultutan, D. (2024). The UK Law Commission's Reforms Proposed to the English Arbitration Act 1996: Bonum, Malum Et Turpe.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Bulletin, 44(1).

Osmanov, F. A. Concept of Arbitration Agreement and Doctrine of Separability. ELMİ TƏDQİQAT, 72.

Noah Rubins, Judicial Review of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NAFTA Investment Law and Arbitration, Todd Weiler, 2005.

Park, W. W. (1996). The Arbitrability Dicta in First Options v. Kaplan: What Sort of Kompetenz-Kompetenz Has Crossed the Atlantic?. Arbitration International, 12(2).

Penades, M., & Tent, P. (2018). Enforc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by National Courts: What Level of Review?. Fach Gómez K, López Rodríguez AM (eds), 60.

Queen Mary University, 「2025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 'The Path Forward: Realities and Opportunities in Arbitration」, 2025,

Susan D. Franck, The Legitimacy Crisi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Privatizing Public International Law through Inconsistent Decisions, (2005) 73 Fordham L. Rev. 1521.

- Van den Berg, A. J. (2014). Should the setting aside of the arbitral award be abolished?.
ICSID Review, 29(2).
- Yalabik, F. T. (2021, January). The Impact of the Seat of Arbitration on Judicial-Interference:
Do Sections 67, 68 and 69 of the English Arbitration Act 1996 Regarding
Challenges of Awards Make London an Attractive Hub?. In Annales de la Faculté
de Droit d'Istanbul (No. 70). Istanbul University.

[국문초록]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제도에 관한 연구

- 국제투자중재판정에 대한 법원 ‘환송’ 제도를 중심으로 -

오현석

본 연구는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환경에서 중재판정의 사후 구제수단으로서 영국 중재법(Arbitration Act 1996)의 독자적 기제인 ‘환송(remission)’ 제도를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한다. 통상적인 ICSID 협약이나 UNCITRAL 모델법은 중재판정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판정 전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영국의 환송 모델은 법원이 하자가 있는 판정문에 대해 기존 중재판정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 시정을 명령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절차적 연속성과 중재인의 전문성을 온전히 보존하며 불필요한 재심리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차별화된 효율성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영국 법원의 주요 판례와 입법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최근의 Elliott 사건 등 실제 분쟁에서의 적용 사례를 통해 환송 제도가 판정의 집행력과 신뢰도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영국의 환송 모델은 중재 제도의 근간인 ‘판정의 중국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법적 감독을 통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정교한 균형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재판정의 오류를 즉각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전략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며, 복잡한 해사, 건설, 금융 분쟁에서 런던이 글로벌 중재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핵심 동인으로 평가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영국의 환송 메커니즘을 우리 중재법 체계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제언한다. 환송 절차의 명문화와 체계화는 사후 구제 단계에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중재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 중재법의 환송 제도는 국제적 표준과 효율적 사법 통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혁신적 모델로서, 한국이 차세대 국제중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필수적인 법률적 자산임을 논증한다.

주제어: 영국 중재법, 국제투자중재, 중재판정 취소, 환송, 중재법 개정

[Abstract]

A Study on the Setting Aside of Arbitral Awards under the English Arbitration Act:

Focusing on the Court's 'Remission' System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Awards

Hyun-Suk Oh

This study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Remission' system—a unique mechanism under the UK Arbitration Act 1996—as a post-award remedy within the landscape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While the ICSID Convention and the UNCITRAL Model Law generally mandate the annulment of an entire award and the constitution of a new tribunal upon discovering material defects, the British remission model allows the court to send the defective award back to the original tribunal with instructions for correction. By doing so, this mechanism preserves procedural continuity and the arbitrators' expertise while offering distinct efficiency by drastically reducing the temporal and economic waste associated with redundant re-hearings.

This paper examines major UK court precedents and legislative intents, specifically contemplating the practical effects of remission on the enforceability and credibility of awards through recent cases such as the *Elliott v. Republic of Korea* disput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UK's remission model presents a sophisticated equilibrium: it upholds the 'Finality of Awards'—the bedrock of arbitration—while achieving 'Substantial Justice' through judicial supervision. It functions as a strategic safeguard that allows for the immediate rectification of errors with minimal judicial interference, serving as a primary driver for London's sustained status as a global hub for complex maritime, construction, and financial disputes.

Ultimately, this study proposes concret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integrate the British remission mechanism into the Korean Arbitration Act. The codification and systematization of remission procedures could improve the high-cost structure of the post-award remedy stage and serve as a powerful incentive for foreign investors by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Korea as an arbitral sea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argues that the remission system of the UK Arbitration Act is an innovative model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efficient judicial control, making it an essential legal asset that Korea must examine to leap forward as a next-generatio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Keywords: UK Arbitration Act, ISDS, Set-aside of Arbitral Award, Remission,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